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47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정성국·서천호·이헌승

곽규택 · 김용태 · 김대식

김예지 · 최형두 · 서지영

유용원 · 최보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무원의 보수조정 등 논의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인 교원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음. 100만 공무원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교원지위법상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결정과정에 교원이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있어, 교원 업무의 급격한 증가에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이 승진하여도 보수체계의 변동이 전혀 없는 구조로 타 직렬 공무원에 비해 처우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 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한다.
 - ② 교원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교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교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기타 교원 보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교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이내
 - 2.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 3.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명 이내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교원보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3조의2(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는 제3조제1 항에 따른 교원의 보수에 대한 우대조치 등 교원의 처우 및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심 의하기 위하여 교원보수위원회 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원보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원 보수수준의 조정에 관 한 사항 3. 기타 교원 보수제도의 개선 에 관한 사항 ③ 교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풍부한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내

- 3.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5 명 이내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 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 로 한다.
-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결과를 교원보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